

#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17. 3. 29.  
일부개정 2020. 3. 24.  
일부개정 2021. 6. 03.  
전부개정 2022. 3. 28.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법인의 재산 보존을 도모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인 내 구성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적용하며, 법인의 전 임직원 및 입주업체 관계자 및 법인의 시설물을 출입하는 방문객에는 일부 적용한다.

②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다른 규정·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안전보건관리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사고”라 함은 불안정한 상태 또는 행동에 관계되어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이고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일체의 사건을 의미한다.

3.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 안전보건관리규정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4.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사고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작업장”이라 함은 연구실, 실험실, 직원의 일상 업무 장소를 말한다.
7.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부서의 안전보건총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관리자로 원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8. “연구주체의 장”이란 부서장 중 연구실을 운영 중인 부서의 장으로 본다.
9. “관리감독자”란 연구실책임자, 실·센터장으로서 해당 조직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0. “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안전법의 연구실 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를 말한다.
11. “전담부서”란 재단의 총괄적인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4.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5. “불안전한 행동”이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상적, 능률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 벗어나는 행동, 즉 위험에 노출되거나 안전성을 저해하는 행동을 말한다.
16. “불안전한 상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상태 조건을 말한다.
17. 건물은 자동차기술지원단, 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 테크노파크 본부동 등 법인 소유의 건물 및 위탁 관리하는 모든 건물을 말한다.
18. 장비는 상기 제14호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기계장치 일체를 말한다.

- 19. “중대산업재해”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재해를 말한다
- 20.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한 재해를 말한다.
- 21. “도급 등”이라 함은 제3자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행위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제3자에게 과업을 의뢰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② “관계법령”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구실 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① 법인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② 법인은 재단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원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의무)** ① 법인의 구성원은 작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업무분장에서 정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재단 출입자 등 이해관계자의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인 안전관계자 및 관리감독자 등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도급 등의 안전관리)** 법인의 도급 등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정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 장 안전 보건 관리 조직과 그 직무

**제7조(조직의 운영)** ① 법인의 안전·보건조직은 안전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서별 특성에 맞게 설치 운영한다.  
 ② 세부 운영에 대한 부분은 관련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각 부서의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인 내 각 사업단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 직무 수행에 대하여는 관련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관리감독자 및 연구실 책임자)** ① 각 부서의 실·센터장이 관리감독자(연구실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연구실 책임자)는 작업 및 연구개발 활동업무와 소속 근로자 및 연구활동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수행에 대하여는 관련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안전관리자)** ① 법인의 안전관리자가 수행할 업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1항”의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위탁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전관리자를 위탁 할 경우 안전전담부서에서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재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11조(보건관리자)** ① 법인의 보건관리자가 수행할 업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1항”의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위탁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보건관리자를 위탁할 경우 안전전담부서에서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재단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12조(안전전담부서)** ① 안전전담부서는 재단 전체의 안전관리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안전전담부서의 규모와 업무는 관련 규칙에 따른다.

**제13조(안전전담부서 전문성 강화)** ①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역량 있는 안전 및 보건관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관련 전공자 또는 안전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소속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자체안전보건위원회)** ① 법인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자체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노사협의회 위원과 재단의 안전·보건 담당자로 구성한다.
- ③ 연구실 안전법에 의한 연구실관리위원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실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사항.
  - 2. 연구실의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
  - 3. 연구실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 4.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 5. 연구실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 6. 그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4조의 자체안전보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결과를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3 장 안전 보건 교육

**제16조(교육의 구분)**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 교육 대상, 내용, 방법 등의 계획을

■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하고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직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해당 직위와 직책에 따른 법인 내 안전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③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 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계획된 교육에 참가 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 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불참 사유를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교육 불참 시는 징계를 건의 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법정 의무 교육 및 기록·보존)**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같은 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방법과 세부사항은 관련 규칙에 따른다. 교육의 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 4 장 안전관리

**제19조(안전보건 시행계획 관리)** 각 부서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안전보건관리 시행계획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위험성평가)**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② 그 시기와 내용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안전보건 진단)** ①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 지정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후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 내의 모든 임직원은 1항에 의거 작성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준수 이행하여

야 한다.

**제22조(산업재해에 대한 대비)** 법인의 사업장에 일하는 직원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재해보험의 안전사고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안전점검 및 지도점검)** 법인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시기와 세부사항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안전검사)** ① 회사는 회사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관련 규칙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 제 5 장 보건관리

**제25조(보건관리 시행)**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유해물질 및 위험물질 관리, 보호구, 사고조사, 대책수립, 안전관리 확인 및 처벌 등은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안법 의거 작업장에 대해서는 측정주기가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 6 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27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법인은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칙과 지침에 따른다.

**제28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긴급조치, 사고조사 및 보고, 재해분석에 대해서는 관련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7 장 안전관리 확인 및 처벌

**제29조(안전보건 제안)** ① 전 직원은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방안을 항상 연구하고 제안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임직원 및 입주기업, 도급 등의 직원들이 홈페이지 ‘안전신고센터’를 활용하여 제안을 하여 조치 할 수 있다.

**제30조(포상 및 징계)** 전담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과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31조(변경절차)**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부 칙<개정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안전관리지침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